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계좌' 세제혜택 유의사항

- ☞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계좌를 활용해 세제혜택을 받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해당 전용계좌 가입대상 조건 및 의무 투자기간 등 세제혜택 적용 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가입 이후 가입조건 부적합 및 세제혜택 적용사항 미준수 등의 사유가 발생 시 계좌 해지 및 세제혜택 추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입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을 위하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투자 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계좌”가 도입됩니다. 현재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계좌(타 증권회사 포함)를 개설하였거나, 개설을 계획 중인 고객께서는 아래 유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세제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계좌 개설 및 투자 시 가입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계좌 개설 및 투자 시 가입대상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개설 및 투자 후 가입대상 조건에 부적합한 경우 계좌 해지가 될 수 있으며, 증빙서류 미제출 시 계좌개설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 및 유의사항 참고>

※ 가입대상 및 구비서류 안내

가입대상	가입유형	구비서류	가입불가
전용저축계좌 개설일 기준 19세 이상인 거주자 가입가능 단, 개설 이후 최초 투자일 기준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가입불가(계좌해지 가능)	일반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
	서민형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상 총급여액 5,000만원 초과이거나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초과 시
전용저축계좌 개설일 기준 15세 이상 19세 미만인 거주자로서 전용저축의 가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입가능 (비과세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 단, 개설 이후 최초 투자일 기준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가입불가(계좌해지 가능)	일반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직전연도 소득금액증명원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
	서민형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상 총급여액 5,000만원 초과이거나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초과 시

- ※ 펀드 투자일 기준 직전년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매년 7월 1일 이후 발급한 서류부터 직전년도 소득 확인이 가능하므로 펀드 투자일이 7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가입가능 / 7월 1일 이전에 개설된 계좌에서 7월 1일 이후 최초 설정하는 펀드는 가입이 불가하므로 추가 계좌개설 필요)
- ※ 직전연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단,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소득증명원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지급확인서로 확인가능)
- ※ 계좌개설일이 아닌 펀드 최초 투자일 기준으로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계좌해지 및 세제혜택이 추징되므로 계좌개설일과 최초 매수일의 시차가 클 경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세제혜택 적용사항

☞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계좌를 통하여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제1항2제2호)의 수익증권 또는 지분증권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제혜택을 전부 또는 일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기간 미준수 및 가입대상 부적합 확인 등 세제혜택 불가사항 발생 시 계좌 해지 및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 참고>

세제혜택	내용 및 한도	적용요건	추징요건
소득공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 투자금액 차등 공제율 적용 -3천만원 이하 투자 시 > 투자금액의 100분의 40 공제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시 > 1,200만원+3,0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0 공제 -5,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시 > 1,60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공제 -7,000만원 초과 투자 시 > 1,800만원 한도	1. 국민성장펀드 최초 설정 시 투자금액(연간 1억원, 총 2 억한도)이내 투자 2. 타인 소유의 국민성장펀드 증권등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 세제혜택 미적용	1. 국민성장펀드 최초 투자일로 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상품(펀드)을 제 3자에게 양도 또는 (일부)환매 시 2. 국민성장펀드 최초 투자일로 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고객 요청으로 해지 시 3. 가입 또는 최초 투자일 당시 가입불가 대상(위규자)이었음이 확인될 시
배당소득 분리과세	투자기간 중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9.9% 분리과세 적용	1. 국민성장펀드 최초 설정 시 투자금액(연간 1억원, 총 2 억한도)이내 투자 2. 타인 소유의 국민성장펀드 증권등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세제혜택 적용	1. 국민성장펀드 최초 투자일로 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상품(펀드)을 제 3자에게 양도 또는 (일부)환매 시 2. 국민성장펀드 최초 투자일로 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고객 요청으로 해지 또는 상품만기 도래 시 3. 가입 또는 최초 투자일 당시 가입불가 대상(위규자)이었음이 확인될 시

※ 소득공제: 양도/환매 시 양도액 또는 환매액의 14%를 곱한 금액 추징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은 고객이 국세청 홈텍스 등을 통해 직접 환급 신청)

※ 배당소득 분리과세: 감면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 추징

3.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인한 특별해지 안내

☞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세제혜택 추징없이 특별해지가 가능하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전에 발생한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 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2026.09.08)

